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720-4176 /전송 737-0105 /담당: 김병렬

문서번호 국무경제 02420- 26

시행일자 1998. 5. . ()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국조실장	국무총리
보존			
조정관	26	김병렬	기획심의관
심의관	8		
담당관	26		
기안	김 병 렬		협조

제목 제4회 국부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1998 - 12)

1. 제4회 국부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국무총리 지시문하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국부통계조사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축적량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계, 정부, 기업, 농업 등 7개부문으로 구분하여 매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법정통계입니다.

3. 금번 실시하는 정부부문 자산조사는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 약 1,6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의 조사로서 조사대상기관의 기관장(단체장) 및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4. 따라서 성공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국무총리지시문”을 하달코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무총리지시문 1부.



제4회 국부통계조사 정부부문 자산조사에 관한 지시

1. 정부는 1998년 3월부터 7월까지 정부기관, 기업 및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축적량을 파악하여 경제적 국력과 그간의 개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부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 조사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 등 5개 정부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68년 최초로 실시한 이후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4번째 조사입니다
3. 국부통계조사중 1998년 5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는 「정부부문 자산조사」는 모든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파악하는 조사로서, 매우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단체)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정확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모든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이 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공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 전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에게도 본 조사의 취지를 널리 알려 이번 국부통계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720-4176 /전송 737-0105 /담당: 김병렬

(제 2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제4회 국부통계 조사실시에 관한 협조요청

1. 정부는 1998년 3월부터 7월까지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부통계조사는 가계, 기업, 정부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부의 축적량을 조사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법정통계입니다.
3. 금번 실시하는 정부부문 자산조사는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 약 1,6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로서 조사대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4. 이러한 본조사의 취지를 조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직원들에게 알리시어 국부통계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부통계조사 대상기관 현황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국부통계조사대상기관

기관명	조사표 작성기관
국회(3기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의정연수원
대법원 (65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서울 등 5개 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등 12개 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울산광역법원
헌법재판소 (1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8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16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720-4176 /전송 737-0105 /담당: 김병렬

(제 3 안)

수신 : 통계청장

제목 : 제4회 국부통계 조사실시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분석 02420-178('98.5.8)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제4회 국부통계 조사실시와 관련한 국무총리지시문을 하달하니
조사대상기관에 시달하시기 바라며(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제외)
3. 조사대상기관중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붙임과 같이 별도로 협조요청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4회 국부통계 정부부문 자산조사에 관한 국무총리지시문 1부.
2. 제4회 국부통계 정부부문 자산조사와 관련한 협조요청문서 사본 1부.



국 무 조 정 실 장

제4회 國富統計調查 概要

1. 國富統計調查 目的

- 각 경제주체(정부, 가계, 기업)가 일정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생산가능한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조사
- 국가의 경제력, 개발성과 등을 측정함으로써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 경제시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調查沿革

- 1968년 제1회 조사실시이후 매10년주기로 3차례 걸쳐 조사실시
 - * 조사통계국, 농림수산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개 기관 참여
- 금번 조사는 통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조사실시

3. 調查基準 時點 및 擔當機關

- 조사기준시점 : 1997. 12. 31 현재
- 담당기관

담당기관	부 문 별	조사규모	조사기간
통 계 청	· 가계자산	약5,000가구	98.3.16~3.26
통 계 청	· 정부자산	약1,600기관	98.5.18~6.30
통 계 청	· 기업자산	약52,000사업체	98.6.22~7.25
농 림 부	· 농업자산	약19,000사업체	98. 6
해양수산부	· 어업자산	약10,000사업체	98. 6
산 림 청	· 임업자산	약10,000사업체	98. 6
건설교통부	· 토지자산	간 접 추 계	-

4. 國富統計中 政府部門 資產調查 計劃

가. 調查基準時點 및 實查期間

- 조사기준시점 : 1997. 12. 31일 현재
- 실사 기간 : 1998. 5. 18 ~ 6. 30

나. 調查對象機關

- 약 28,000개 중앙정부, 지방행정, 지방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중에서 최종적으로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약 1,600개 기관
 - * 중앙정부기관 999개, 지방행정기관 276개, 교육기관 197개, 공공단체 139개

다. 調查對象資產

- 조사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라. 調查方法

- 우편조사에 의한 조사표 작성 및 전산자료 복사방법 병행

마. 弘報計劃

- 조사대상기관에 국무총리지시문 하달, 국정신문 및 관보게재

5. 報告書 発간 : 1999. 6월